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에너지요금위원회에서 집단에너지요금 상한 결정〉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35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소희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3.
3. 회부연월일 : 2025.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

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사업자가 요금 등에 관한 공급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인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집단에너지요금의 상한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¹⁾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공급규정) ① (생략)	제17조(공급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 ----- ----- -----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에너지요금위원회가-----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개정안과 연계하여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①에너지요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3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31호) 및 ②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의 인가·승인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요금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34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32호)이 함께 발의되어 있음.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³⁾를 마련하여,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 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의 110%를 열요금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정책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예를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상승하였음에도 전기요금은 이에 맞추어 인상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전력판매의 역마진구조가 형성되어 전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대상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9조(열요금 상한) ① 열요금 상한은 사업자가 열요금 신고 시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도로서,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이하 “시장기준요금”이라 한다)의 110%를 요금 상한으로 한다.

기관매사업자인 한전의 경영위기가 초래된 측면이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에너지요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⁵⁾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집단에너지요금 상한을 독립 규제기관인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요금 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집단에너지 요금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요금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는 경우,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요금 결정 과정에서 대외적인 영향력을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에너지요금위원회가 기후에너지장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에너지요금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이 1인에게 부여된 독임제 행정청과 달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4) 일례로, 2022년 기준 한전의 전기판매수익은 약 67.3조원이었으나, 구입전력비는 약 92.7조원 수준이었음.

5) 「정보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려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233호)이 발의되어 있음.

합의제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효율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음.

둘째, 현재 인·허가나 시장 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양한 에너지 관련 규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 에너지 가격 결정기능만을 분리하여 에너지요금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한다면 규제 정책의 정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에너지요금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에너지 요금 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 에너지원인 전기, 가스 및 집단에너지(열)는 에너지별로 그 자체의 특성과 판매구조가 상이하다는 점⁶⁾에서 에너지원별 특성에 부합하는 요금 결정과 시장 규제가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등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에너지 규제 기구를 두고있는 해외 주요국은 에너지 산업이 개방되어 자유화된 시

6) 예를 들어, **전기**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되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데에 전력망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있으며, 전국의 전력망(계통)이 하나로 연결된 특징으로 인해 한전이 전력소매시장에서 판매자 지위를 독점하고 있음.

반면,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여러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를 공급하면 개별 소매기업이 서로 다른 요금체계 아래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고, 거주시설의 난방이나 발전 원료로 주로 사용됨.

집단에너지(열)의 경우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난방용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이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시장이 민간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수송관을 통해 공동주택 및 산업단지 에 열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활동임.

장을 규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성이 있으나, 국내의 경우 해외 사례와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단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 지정,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등 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 요금의 가격 결정기능만 에너지요금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은 정책의 일관성·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⁷⁾은 주무부 장관이 공공요금을 정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현행 공공요금 결정 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집단에너지요금 등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권한 일체를 독립된 규제기관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하려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207819호)이 2025년 1월 24일에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 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2] 에너지요금위원회 및 전기가스열위원회 관련 법률안 비교

구 분	김소희의원안 (의안번호 제2214235호)	김정호의원안 (의안번호 제2307819호)
명칭	에너지요금위원회	전기가스열위원회
성격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무총리	국무총리
주요기능	· 전기요금 인가 · 가스요금 승인 · 집단에너지요금 상한 지정	·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 행정처분, 사업자에 대한 감독, 구조개편, 분쟁 조정 등
위원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아울러, 개정안의 취지대로 집단에너지 요금을 “에너지요금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법」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수적인 바, 동 개정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1호)의 심사경과를 반영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3